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 상품특징: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긴급지원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특별현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 건설근로자공제회 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등 보험급여 (압류금지채권), 노란우산공제 공제금만 입금되어 관련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 통장

2. 거래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기본이자율 (2020.11.13 현재, 세전)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이자계산방법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함
이자의 지급방법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예금과목	저축예금

계약해지 방법	영업점 방문
휴면예금출연	이차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1인1계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금수급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 특별연금 급여비 수급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예금자보호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관련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우대서비스	1)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면제 [단, 다른은행으로의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불가] 2) 신한은행 CD/ATM기를 이용한 마감후 인출 수수료 면제
우대요건	1) 대상고객 : 매월 말일자로 이 예금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2) 우대기간 : 다음달 16일부터 다음 다음달 15일까지 3) 우대조건(전달 1개월간 실적)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긴급지원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특별연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 등 보험급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입금된 경우

	<p>※ 이 예금 가입후 최초 3개월 경과월의 15일까지는 상기 우대서비스의 수수료 우대항목을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우대함</p>
입금가능자금	<p>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지정한 수급금,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또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만 입금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생활보장급여 2) 기초연금 3) 장애인연금 4)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 요양비 등 보험급여(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7) 긴급지원금 8)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9) 특별현금 급여비 10) 퇴직공제금 11) 아동수당 1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1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4) 재난적의료비
거래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3) 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긴급지원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특별현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만 입금됨에 따라 통장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77-8000으로 연락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080-023-01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요약 상품설명서

■ 기본 정보

기본이자율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20.11.13 현재, 세전
입금제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의 보험급여, 특별연금 급여비,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만 입금 가능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사항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 시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수령해야 함
은행의 상계	불가
양도	불가
담보제공	불가
유동성대출계좌	사용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